

고객정보 등록

☐ 상품유형추가 ☐ 방문개설

법인(단체)명	KB SECURITIES		근무부서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투자등록증/LI번호 등	17372	해외주소	해외주소 기재		
사업장 (우편물 수령지)	☐ 직장 * 주소 및 연락처는 당사와 최초 거래시 또는 변경시에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별 대표주소로 등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73				
	직장전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73	휴대전화	FAX	
업종			E-mail	@	
외국법인 추가정보	국적	☐ 대한민국 ☐ 해외()	투자자분류	☐ 금융투자업자 ☐ 보험회사 ☐ 집합투자기구 ☐ 사모집합투자기구 ☐ 은행 ☐ 기타금융기관 ☐ 연금,기금 및 공제회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및 공익기관 ☐ 기타법인	

I 고객통보사항

약관변경동의	☐ 직접조회 ☐ E-mail	출금SMS	☐ 신청 ☐ 거부	RP종목대체사전동의	☐ 동의 ☐ 거부
--------	---	-------	---	------------	---

고객거래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 의무),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4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의5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정보·문서·자료 등을 수집하며, 고객님께서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님에 대한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종료됩니다.

고객정보 (사업장주소, 연락처, 업종 등)	☐ 기 등록된 고객정보와 동일 ☒ 위 고객정보와 동일	
본점주소	☐ 위 사업장 주소와 동일 주소 : 사업장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 국가 : ☐ 대한민국 ☒ 해외 (국가명 기재)	
본점전화번호	가상통화취급업소	☐ 예 ('가상통화취급업소 확인서' 추가 작성) ☐ 아니오
사업체설립일	기업규모	☐ 대기업 ☐ 중소기업 상장여부 : ☐ 상장 (거래소명) ☐ 비상장
비영리법인(단체) 설립목적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중 4, 5번째 자리가 80, 82, 89인 경우 필수 작성 바랍니다. ☐ 교육 ☐ 문화 ☐ 사회사업 ☐ 영리 ☐ 자선 ☐ 종교 ☐ 친족 ☐ 학술 ☐ 기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국적 : 외국인만 기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국적 : 외국인만 기재
실제소유자	작성인정보 : 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73 직책 : 대표 작성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73 (인/서명)	아래의 법인(단체)중 해당하는 유형이 있습니까?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제2호) ☐ 금융회사 ☐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아래 ①~④의 순서대로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에 [예], [아니오]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예] 선택 시 하위 항목은 추가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①~⑤ 항목에 해당하는 자를 실제소유자 정보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법인(단체)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②법인(단체)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자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③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④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⑤①-④항 모두 [아니오]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국적을 아래의 실제소유자 정보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실제소유자정보 : 성명 : 국적 : 외국인만 기재 생년월일 : ①~③인 경우 지분율(%) : ①, ②인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EDD :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 원천 및 출처	☐ 영업이익 ☐ 영업 외 이익 ☐ 차입 ☐ 자본조달 ☐ 기금모집 ☐ 출자금 ☐ 운용수익금 ☐ 대리인 거래 ☐ 기타()		
거래목적	☐ 여유자금운용 ☐ 자산증식 ☐ 경영권획득 ☐ 공모주 청약실적유지 ☐ 결제-보험료·공과금·카드·대출원리금 ☐ 대리인거래 ☐ 기타()		
홈페이지	E-mail		
거래구분	거래상품	월간 예상거래 금액	월간 예상거래 횟수
☐ 입금 ☐ 출금	☐ 현금/수표 ☐ 전자이체 ☐ 자동이체(급여 등) ☐ 기타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2억 5천만원 미만 ☐ 2억 5천만원 이상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0 ~ 10회 ☐ 11 ~ 20회 ☐ 21회 이상 ☐ 50회 이상

본인확인서

본 확인서는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서식입니다.

PART 1. 고객정보

주소(본점 주소)	해외주식회사 (영문작성)			전화번호	
조세목적상 거주지 (본사 설립지국 등) 및 납세자번호 (TIN :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납세자번호 미제출 사유 (미국은 미제출 불가)	
1	국가명	* 외국은 영어로 작성 바랍니다.	납세자번호 (TIN : SSN 또는 ITIN)	☐ 미발급 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2	국가명	* 외국은 영어로 작성 바랍니다.	납세자번호 (TIN : SSN 또는 ITIN)	☐ 미발급 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미제출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PART 2. 확인사항

■ 아래질문 ①, ②항은 필수 작성 항목이며, 질문 ③~⑤항은 작성방법 안내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귀 법인은 조세목적상 미국법인 또는 미국기관 등에 해당하십니까? [예]를 선택한 경우 ⑥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②	귀 법인은 예금기관, 수탁기관, 투자법인 또는 특정보험회사(이하 "금융회사")에 해당하십니까? [예]를 선택한 경우 뒷면 ⑦항을 작성하고,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질문 ③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③	귀 법인은 다음의 보고제외 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십니까? [예]를 선택한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하고,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질문 ④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권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법인	☐ 예 ☐ 아니오
	☐ 정부기관(정부소유 법인 포함) ☐ 중앙은행 ☐ 국제기구	☐ 예 ☐ 아니오
④	귀 법인은 다음의 능동적 비금융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십니까? [예]를 선택한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하고,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질문 ⑤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 신생법인 ☐ 청산 또는 조직변경 중인 법인 ☐ 능동적 일반법인 ☐ 공익적법인 ☐ 직전 연도 총 수입의 50% 미만이 수동적수입이고, 직전 연도의 보유 자산 중 50% 미만이 수동적수입을 창출하거나 수동적수입의 창출을 위하여 보유된 경우 ☐ 지주회사 / 재무센터 / 전속금융회사 ☐ 비금융그룹 ☐ 미국령 소재 법인 ☐ 미국연방세법 제501(c)법인	
	▶ 수동적수입이란 이자, 배당, 임대료, 수동적자산 매각이익 등에서 발생한 수입을 의미하며,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임대료는 제외한다.	
⑤	②~④ 질문에 모두 [아니오]로 답변하신 귀 법인은 수동적 비금융법인에 해당합니다. 귀 법인에 실질적인 지배력(25% 초과 지분 직·간접적 보유 포함)을 행사하는 해외 납세자가 있으십니까? [예]를 선택한 경우, 뒷면 ⑧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 "수동적 비금융법인"이란 직전 연도 총 수입의 50% 이상이 수동적수입에 해당하고, 직전 연도의 보유 자산 중 50% 이상이 수동적수입을 창출하거나 수동적수입의 창출을 위하여 보유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PART 3. 본인확인

- ☐ 본인은 본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보 변경,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귀사에 통지하겠습니다.
- ☐ 본인확인서 제출을 부당하게 거부, 허위정보를 기입하는 행위 등은 금융기관의 실사·보고의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의무이행 방해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됨을 고지드립니다.
- ☐ 본인은 보고대상 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본 서식에 요청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의해 개인정보 및 계좌(계약) 관련 정보가 국세청에 보고되고 거주관할권 등에 제공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하였습니다.

추가확인사항

본 페이지에서는 위 본인확인서의 PART-2 확인사항에 귀 법인이 기재하신 내용 중 [예]라고 표기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FATCA 보고 제외 (PART-2 ① 질문에 [예]를 선택한 경우)		
⑥	미국법인 또는 미국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의 보고 제외 미국법인 유형 중 해당하십니까? [예]를 선택한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 주권상장법인 ☐ 미국 세법에 따른 면세기구 또는 퇴직연금 ☐ 미국 소재 공통투자신탁펀드 ☐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법인 ☐ 미국 소재 은행 ☐ 미국 소재 특정 면세 신탁 등 ☐ 미국 정보기관 등 ☐ 미국 세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신탁 ☐ 미국 소재 특정 금융상품 딜러 ☐ 미국령 지역 관할정부(기관) 등 ☐ 미국 소재 특정 규제 대상 투자회사 등 ☐ 미국 소재 특정 중개인		

B 금융회사 (PART-2 ② 질문에 [예]를 선택한 경우)	
⑦ 다음 중 해당하는 금융회사 유형에 체크(✓)하시고 아래 a~e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지주회사 및 여신전문 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캐피탈 등)는 금융회사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예금기관 ☐ 수탁기관 ☐ 투자법인 ☐ 특정보험회사
a 보고대상 관할권이 아닌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며, 다른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투자법인입니까? [예]를 선택하고 귀 법인에 실질적인 지배력(25% 초과 지분 직·간접적 보유 포함)을 행사하는 해외 납세자가 있는 경우 ⑨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b 미국국세청(IRS)에 의해 비참여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은 국내 또는 FATCA 협력관할권 금융회사입니까?	☐ 예 ☐ 아니오
c 미국국세청(IRS)에 글로벌금융회사등록번호(GIIN)가 등록되어 있으면 GIIN을 작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d~e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GIIN	
d 글로벌금융회사등록번호(GIIN)가 없는 경우, 다음의 공통 비보고 금융회사 중 해당하는 유형이 있습니까? [예]를 선택한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체크(✓)하고,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e 항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CRS / FATCA 공통 비보고 ☐ 다수참여 퇴직펀드 ☐ 수탁자 자료제출형 신탁 ☐ 정부단체 등의 연금펀드 ☐ 소수참여 퇴직펀드 ☐ 금융회사 자료제출형 투자법인 ☐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e 글로벌금융회사등록번호(GIIN)가 없는 경우, 다음의 비보고 금융회사 중 해당하는 유형이 있습니까? [예]를 선택한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유형을 CRS 및 FATCA 비보고 금융회사 별로 각각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CRS 비보고 ☐ 면제 집합투자기구 ☐ 국내지점전용 금융회사 ☐ 금융위 인정 금융회사 FATCA 비보고 ☐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 ☐ 피후원 투자기구 ☐ 국내설립 면제집합투자기구 ☐ 적격 퇴직연기금 ☐ 지역은행 ☐ 피지배 외국회사 ☐ 제한된 펀드 (2017.1.1까지만 적용) ☐ 특정 투자법인 ☐ 소액계좌 금융회사 ☐ 피후원 폐쇄형 투자기구	

C 실질적 지배자 (PART-2 ⑤ 질문에 [예]를 선택한 경우 또는 B-⑦-a 질문에 [예]를 선택한 경우)			
⑧ 귀 법인에 실질적인 지배력(25% 초과 지분 직·간접적 보유 포함)을 행사하는 해외 납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납세자등록번호(SSN-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성명(대문자)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영문)			
조세목적상 거주지국 (영문)		납세자번호 (TIN : SSN 또는 ITIN)	
1		☐ 미발급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2		☐ 미발급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미제출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영문성명(대문자)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영문)			
조세목적상 거주지국 (영문)		납세자번호 (TIN : SSN 또는 ITIN)	
1		☐ 미발급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2		☐ 미발급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미제출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하오니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당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서류의 정당 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본 확인서의 성실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 금융투자상품 거래		
	[] 기타 거래 (우측 자필로 기재)		
구분	항 목	예	아니오
공통	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통장/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미성년자 여부와 상관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②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법인통장 개설시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금융거래한도 계좌 안내			고객확인[✓]
▶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까지 제한된 한도가 적용되는 금융거래한도 계좌로 개설됩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는 1인 1개좌만 개설 가능) -창구를 통한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의 경우 1일 300만원 -ATM기를 이용한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의 경우 1일 100만원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의 경우 1일 100만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계좌로 등록된 적이 있는 고객의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불법차명 금융거래 금지에 대한 설명 및 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장(카드) 양도 금지 설명 및 확인

통장·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 거래법상 통장(카드)양수·양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설계좌 선택

원천징수	☐ 위임 ☐ 미위임 (금융법인만 가능)	부기명		
☐ 종합위탁	☐ 종목별증거금 (미사용) ☐ 100%증거금 (보유현금 초과하여 매수 불가) * 주식, 채권, ELS, 펀드, 해외주식, RP, 신탁, 발행어음 등 거래 가능 * 미수거래 관련 안내 : 종목별증거금(미사용)을 신청한 계좌에서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위탁증거금을 40% 증폭 매수 시, 예수금의 40%로 주식을 매수하고 동 주식 결제 전 나머지 예수금 60%로 RP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매수대금의 60%만큼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 펀드, RP, 신탁 거래가능	☐ 금융상품	☐ 금융상품	
통지방법선택	RP매매통지방법 (RP형 CMA 포함) ☐ 통보사절 ☐ E-mail ☐ 직접조회	펀드실질수익률통보	☐ 직접조회 ☐ E-mail ☐ SMS ☐ 우편	
☐ CMA	투자대상	☐ RP ☐ MMF ☐ MMW [투자결과수령방법 ☐ 우편 ☐ FP전달 ☐ E-mail ☐ 사절] ☐ 발행어음		
	☒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고객·판매 담당 임직원 확인			
	☐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			
	고객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가능성(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음) (동 상품의투자위험은 6등급 중 등급(매우높은위험/높은위험/다소높은위험/보통위험/낮은위험/매우낮은위험)으로 최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환매 불가여부등 해당상품의특성을충분히이해하였음)		
	* CMA 투자상품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판매 담당 임직원	(설명서 내용을 숙지하고, 상품의 위험도, 최대 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 조건 등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음) 판매점 : 직원사번 : 성명 : (인/서명)		
MMF형 ☒ 종목명 : KB법인용 MMF I-2호 (국공채)C 약정내용	본인은 CMA투자상품으로 MMF를 선택한 경우 당일출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펀드담보대출 약정을 신청합니다. 1.MMF를 보유한 상품에 출금가능 예수금이 없거나 당일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본 약정에 근거하여 대출하는 방식으로 출금합니다. 2.출금을 대출금으로 처리할 경우 대출한도는 고객의 예탁자산 범위내에서 출금가능합니다. 3.대출기간은 출금(대출)일부터 출금(대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4.대출금은 출금(대출)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 영업일에 펀드를 자동으로 환매하여 상환합니다. 5.기존의 펀드를 담보로 대출한 경우 대출이자는 출금액(대출액)의 대출기간 동안의 펀드 기준가상승분으로 합니다. 6.법인이 결제예정 펀드를 담보로 대출한 경우 대출이자는 출금액(대출액)의 대출기간 동안의 당사가 정한 예탁금이용료로 합니다. 7.시장상황 변동에 의해 기준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출금가능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물옵션	☐ 국내 ☐ EUREX연계거래 ☐ 해외선물온라인(위탁) ☐ CFD거래 ☐ ()			
☐ 퇴직연금				
☐ 종합위탁Wrap	☐ 종합위탁Wrap		☐ 종합위탁Wrap	
☐ 금현물	실물사업자 ☐ 해당 ☐ 미해당	금거래계좌(실물사업자만 작성) 타기관명 / 계좌번호 신한은행 동일인명의		
* 실물사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신한은행)를 보유한 금현물 취급 사업자(법인)입니다				

거래매체

무 매 체

기본거래매체	☐ 카드(☐ 미발급) ☐ 통장	* 카드 선택시 카드에 등록된 인감으로 종합계좌에 설정된 모든 상품의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카드 미발급 선택 시 추후 내점하여, 입출금 등 카드가 필요한 업무의 경우 카드 재발급 후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통장 선택시 종합카드의 추가발급 또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다수상품개설시 대표입금계좌 상품유형	통장추가발급신청	☐ CMA통장 ☐ 종합위탁통장 (상품유형번호) * 기본매체가 카드인 경우에 한해 통장 추가 발급 신청가능

온라인 및 기타서비스

온라인서비스	☐ HTS(홈페이지) ☐ ARS(폰뱅킹) ☐ MTS(모바일)		☐ 유선계좌간대체	
거래내역 / 잔고통보	☐ 직접조회 (HTS 또는 MTS 신청필수) ☐ E-mail ☐ 우편 * 직접조회는 고객님의께서 온라인트레이딩을 통하여 직접조회하며,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매매체결통보	☐ 직접조회 (HTS 또는 MTS 신청필수) ☐ E-mail ☐ SMS ☐ PUSH * 국내시장통보시간 : SMS- 전량체결(즉시), 일부체결(장종료후) / E-mail- 장마감후 * 해외주식통보시간 : SMS- 전량체결(즉시), 일부체결(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19시, 미국 장마감후 10분 후) / E-mail- 통보 안됨 * 직접조회는 고객님의께서 온라인트레이딩을 통하여 직접조회하며,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직접조회와 SMS / E-mail / PUSH 중 하나는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잔고증명서 정기발급	법인 월말잔고 정기발급	☐ 개별 ☐ 통합		이메일 정기발급 ☐ 신청
	잔고증명 유선발급 신청	☐ 신청 [최대2년 시작일 : 년 월 일 ~ 종료일 : 년 월 일] * 법인월말 정기잔고 발급이 신청된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개별잔고증명 / 거래내역만 발급 가능합니다.		
계약서류 교부방법	☒ E-MAIL ☐ SMS ☐ 서면 * 계좌개설, 상품가입, 약정시 선택하신 교부방법으로 계약서류가 발송됩니다.			

1 송금 및 대체

원화 유선송금 * 동일한 계좌만 가능합니다.	타기관명 / 계좌번호		타기관명 / 계좌번호	
	타기관명 / 계좌번호		타기관명 / 계좌번호	

자동대체 * (인/서명) : 신규개설계좌가 출금계좌인 경우는 인감날인 생략 가능합니다.	1) *출금계좌번호(상품유형)	고객명 (인/서명)		시작일	종료일
	입금계좌번호	펀드가입번호	고객명	자동대체일	대체금액
	2) *출금계좌번호(상품유형)	고객명 (인/서명)		시작일	종료일
	입금계좌번호	펀드가입번호	고객명	자동대체일	대체금액

I 기타 송금 및 약정 서비스

외화 유선송금 * 동일인 계좌만 가능합니다.	고객 영문명				
	1) 타기관명	계좌번호	계좌명		
	1) 타기관명	계좌번호	계좌명		

외화연계계좌신청	☐ 하나은행 ☐ KB국민은행 (고객 영문명:)
----------	--

원리금자동이체/대체	(원화)입금	☐ 원금+이자 ☐ 이자	☐ 대체(본인명의 CMA) ☐ 이체(유선송금약정계좌)	계좌번호(상품유형) :	타기관명 :	타기관계좌번호 :
	(외화)입금	☒ 원금+이자	☐ 이체(유선송금약정계좌)	타기관명 :	타기관계좌번호 :	

I 선물옵션 연계등록

선물옵션 연계계좌 지정	대용증권계좌번호(종합위탁 계좌번호)				
	※ 선물대용 지정된 종합계좌간에는 유선대체입출금거래가 가능합니다. ※ 선물옵션 상품의 대용증권 지정 및 자금이체를 위한 현물 연계계좌를 신청하며, 본인이 예약한 대용증권을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KB증권이 거래소에 담보로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EUREX연계거래계좌 연계등록	국내선물계좌번호				

I 보안매체 * 온라인송금거래는 OTP로만 이체 가능합니다.

보안매체	☐ OTP생성기 ☐ 타기관OTP등록	고객정보확인	☐ 등록된 연락처로 유선확인 ☐ 관리자에게 유선확인
------	---	--------	--

I 고객유의사항

- 거래약관승인: 금융투자 종합계좌 거래약관 및 설정상품별 거래약관, 신청서비스이용약관을 승인합니다.
 - 투자설명서 및 거래설명서 교부확인: 파생상품(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에 관련한 설명서), 해외파생상품, CFD거래, Eurex연계거래, 외화증권, ELW, 일종매매, 금현물, 시스템트레이딩 거래시 거래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거래설명서 또는 안내서를 교부 받았으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할 것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 이용 안내문을 교부 받고 설명 들었으며, 해당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업무위탁 : 당사의 업무위탁 내용을 홈페이지내 법적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P종목대체 사전동의 및 통지방법 확인: 일반 RP는 BBB등급이상, CMA RP는 A등급이상의 우량한 채권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RP매매채권은 만기나 운용상등의 이유로 인하여 위에 제시된 등급내에서 종목변경이 가능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사전 동의합니다. RP매매 통보를 사절하신 경우 별도의 매매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e-mail, 직접조회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e-mail 통보나 온라인매체를 통한 직접확인으로 매매통지를 갈음합니다. KB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RP의 경우 해당 영업점 및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온라인매체를 통하여 매매거래 내용을 언제든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MMW형 CMA 약관 등 승인: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 계약권문서, 투자일임자산평가기준, 수수료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에 필요한 상기문서를 수령하고 회사와 투자일임 계약 체결을 확인합니다.
 - 발행어음형 CMA 약관 등 승인: 발행어음약관, 상품설명서를 제공받고, 수익률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당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원리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고,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시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됨을 확인합니다.
 - 거래매체 수령확인: 종합카드 또는 통장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불법차명 금융거래 금지 및 통장(카드)양도 금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틀림없이 기재하였습니다.
 - 그룹사간 고객정보 확인: 금융투자회사법 제48조의2에 근거 KB금융그룹 내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함과 고객정보 등의 취급방침에 대한 설명 및 교부를 받았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 계좌개설 시 확인: 외국인 투자자 식별수단 사용에 따른 유의사항을 교부 받았으며,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예탁금* 중 증권예수금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현금예수금(위탁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신용공여 관련 담보금 등, 비과세종합저축 등 저축예수금, 조건부예수금
 - 퇴직연금 DB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DC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당사 홈페이지(www.kbsec.com)내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좌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투자등록증 서명

반인인증서 사용인
(인/서명)

인감지 부착란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 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 또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 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여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원칙 대상상품 거래 희망시에는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1. 고객님의에서 운용하려는 자금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① 잉여자산 ④ 개인(직원포함)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산	② 사업소득 ⑤ 장기부채 (1년 이상) 단기부채 (1년 이하)			
2. 고객님의 자본금 규모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① 1천만원 미만	② 3천만원 이하	③ 5천만원 이하	④ 1억원 이하	⑤ 1억원 초과
3. 고객님의에서 운용하려는 자금은 자본총계 대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① 10% 미만	② 10% 이상 ~ 20% 미만	③ 20% 이상		
4. 고객님의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6개월 이내	② 6개월 이상 ~ 1년 이내	③ 1년 이상 ~ 2년 이내	④ 2년 이상 ~ 3년 이내	⑤ 3년 이상
5.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투자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②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③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지는 ELS, 혼합형 펀드 등 ④ 주식,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주식형펀드 등 ⑤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6. 고객님의에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은 수준 :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② 낮은 수준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③ 높은 수준 :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④ 매우 높은 수준 : 파생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7. 고객님의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제외)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① 10% 이하 ④ 30% 초과 ~ 40% 이하	② 10% 초과 ~ 20% 이하 ⑤ 40% 초과	③ 20% 초과 ~ 30% 이하		
8. 고객님의 투자원금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 중 고객님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① 투자원금 보전을 선호한다. ② 10% 이하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③ 20% 이하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④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9.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	□투자기간: (년 월)				
10.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① 단기자금 운용	② 자산증식	③ 채무상환	④ 위험 헷지	⑤ 기타()

본인의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 ※ 투자자정보 외에도 고객 정보(주소, E-mail 주소, 전화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수임인(대리인) 정보 [* 고객거래확인서 검용]

대리인 성명	상임대리인 자문 자문기24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주소					본인과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직업	성별	☐ 남 ☐ 여	
(재)외국인추가정보	생년월일 :	국적 :	거주여부 : ☐ 거주 ☐ 비거주		
위임사항	☐ 계좌개설 ☐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 HTS ☐ ARS ☐ MTS ☐ OTP ☐ 유선송금 ☐ 유선계좌간대체 ☐ 통장추가발급 ☐ 기타 : 구체적 기재				
주문대리인 등록 (위 개설대리인, 법인대표자로 등록하는 경우 선택)	상품유형	위임만료일	년	월	일
	다수계좌 주문대리인		☐ 주문대리인이 다수 계좌의 주문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6조, 제17조, 제18조, 제445조에 의거 주문대리인이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계좌주로부터 주문대리인으로 지정 받고, 위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문대리인 : (인/서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 의무),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 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의 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정보·문서·자료 등을 수집하며, 고객님께서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님의 대한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종료 됩니다.

상기 위임인인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위의 사항을 위임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본인) 성명 : 투자등록금 1306

(인/서명)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대리인용)

본 동의서는 요약동의서이며 요청하면 전체 동의서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요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 (금융)계약의 체결 · 유지 · 이행 · 관리 · 개선 - 법령상 의무이행(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 불공정거래예방, 적합성확인 등) - 금융사고 방지(본인확인, 이상금융거래탐지 등), 분쟁 · 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설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수집 · 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4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13개	일반개인정보(12개)	신용거래정보(0개)	신용도판단정보(0개)	신용능력정보(0개)	공공정보(1개)
	성명, 생년월일 등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일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년 월 일

대리인 성명 : 상임대리인 자문 1306

(인/서명)